



#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K-water",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말한다.
4. '주관자'라 함은 "엑스코"를 말한다.

### 제2조 (참가 신청 및 접수)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의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부대시설 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4. 전시회 참가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조 (전시위치 배정)

1. 주관자는 신청서 접수 순서, 참가비 입금 순서, 신청 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회의 장치설치 이전에 한해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 및 면적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 (전시회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의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전시 공간의 원형을 변경, 파손, 훼손해서는 안되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시 품목, 전시 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총 일괄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시자가 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 제6조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서면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1개월 전(2021. 10. 28.)까지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에게서 수령한 참가비 중 참가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을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동 취소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1개월 전 이후(2021. 10. 29.이후)에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전시회의 취소, 개최일의 변경, 또는 전시회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전시품 진열 및 홍보 활동)

1. 전시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면적에 대한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여야 하고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한 전시품목 외의 전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 및 장치설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최자,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도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 및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쌍방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자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른다.